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확정된 재판기록을 공개대상으로 명문화 등〉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7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비공개 사유의 소멸 예시에 ‘재판의 확정’을 추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 -----.
1. ~ 3.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u>기간</u> 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② ----- ----- <u>재판</u> <u>의 확정이나 기간</u> -----

현행	개정안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 ③ · ④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임.¹⁾

현행법 제3조 및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원칙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²⁾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3)에
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따른 비밀·비공개 사항(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외교 등(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3호), 진행 중인

②~⑤ (생략)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
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②~④ (생략)

재판 또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제4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제5호), 개인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7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제8호)을 열거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제2항).

개정안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9조제1항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요건에서 당연히 제외되므로 입법 실익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비공개 결정 통지 시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u>이유</u> 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이유(공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가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한다)----- -----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비공개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와 입증 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입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자체가 입증 자료인 경우, 예를 들면 현행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증 자료로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정보공개 대상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이 입증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는 점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정보가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부작용, 행정업무부담 가중, 정보공개 처리 기간의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입증 자료”라는 용어의 사전적 개념은 사실이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말하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비공개 결정처분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4) 대법원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결(2006.1.13. 선고 2003두9459)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필요해 보임.

참고로, “입증 자료”라는 용어가 본래 개념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유사업법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 등이 있음.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재판 기록의 비식별화를 통해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의 기록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부분 공개) (생략) <신설>	제14조(부분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판의 기록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식별 처리의 기준은 대통령령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송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 경과 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부 사항만을 공개하게 되는 등 지적이 제기됨.⁸⁾

개정안은 소극적 재판기록 공개 실태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확정사건에 대하여는 비공개

8)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81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4.7.8. 제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해 보임.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화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 제4조(적용 범위)⁹⁾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¹⁰⁾한 바 있음.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권해석¹¹⁾도 있음.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재판기록 공개 관련 : 개정안 vs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구분	개 정 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 제14조(부분 공개)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제59조의2(재판확정 기록의 열람·등사) ·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공개 대상	· 확정된 재판기록	· 소송기록 · 재판서·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 재판확정기록 · 확정판결서등(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공개범위 및 공개방식	· 현행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화하여 공개	·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열람·복사, 교부 · 누구든지 열람(공개 금지된 변론 관련 소송기록은 제외) · 비밀보호를 위해 열람 등을 당사자로	· 누구든지 열람·등사 ·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 제한 - 비공개 심리,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발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분	개 정 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한 -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의 공개를 넘어 ‘재판기록’을 소송관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면 공개하는 것은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영업비밀,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현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정보공개법이나 기록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과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될 우려가 있으며, 재판 공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자율을 보장하는 해외 입법례와도 상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를 담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¹²⁾,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¹³⁾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음.

둘째, “재판기록”이란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소송기록, 소장, 판결문, 답변서, 재판서, 조서 등 상당히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¹⁴⁾ 공공기록물에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과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¹⁵⁾)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된 재판의 기록”이라는 개념 정의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재판기록 중 소송의 당사자와 관련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범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소송 관련 정보를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할 경우, 해당 정보에 법인·단체 또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481호, 2025.7.15. 제안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193호, 2025.7.1. 제안

14) 참고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7.12. 선고 2022구합813판결,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이 있음.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을 말한다.

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처리를 하더라도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와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예외적 공개 사유로 규정¹⁶⁾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비식별 처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리스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통해 정보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¹⁷⁾¹⁸⁾를 말하는데, 개정안은 비식별화 대상을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식별화 대상 범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임.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17) IHE IT Infrastructure Handbook(2014년)은 De-identification의 방법으로 anonymization 및 pseudonymization으로 구분하여 익명화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Anonymization(익명화)는 one-way De-identification 방법을 의미하고, Pseudonymization(가명화)은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임의의 코드나 번호(Pseudonym, 가명)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CISP 참조).

18) ‘비식별화 처리’란 데이터 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일부를 속성 정보로 대체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 방법을 말함(「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활용 안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에 더하여 비식별화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비식별화의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재식별화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